

# 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. 3. 21

상 주 시



##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공고기간: 2017. 3. 21. ~ 2017. 4. 7.

2. 송달내역

성 명	송 달 주 소	위반일자 (장소)	위반내용	예정된 처분내용	비고
윤철웅	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62번길 *****	2017. 2. 12 속리산 문장대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금지행위 위반(취사행위)	과태료 100,000원 (자진납부시 80,000원)	

3. 문 의 : 상주시청 환경관리과(전화 054-537-7355, 팩스 054-537-6189)

4. 기 타

-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의견 제출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자연공원법 위반(과태료 처분)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자연공원법 제86조(과태료), 행정절차법 제27조(처분의 사전통지) 및 제31조(청문의 진행)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,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(의견청취 등)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17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의견 제출인 주소 :              전화 :              성명 : (서명 또는 인)        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상 주 시 장 귀하</p>		
비고	<p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

※ 정보통신망(전자우편, 팩스 등)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